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21. 10. 19 / (총 3매)	담당부서	아동권리과
과 장	송 양 수	전 화	044-202-3430
담 당 자	공 주 영		044-202-3441

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10.19~11.29)

-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 -
- 디딤씨앗통장 정부 분담(매칭)비율 확대(1:1→1:2) -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,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(매칭) 비율 확대 등을 담은 「아동복지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(화)부터 11월 29일(월)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-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,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‘면접교섭’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.
 -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,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하였다. (시행규칙 제11조의2, 제11조의6)
 - 또한, 올해 7월에 발표한 「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」의 과제 중 하나인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(‘디딤씨앗통장’)의 정부 분담(매칭)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(1:1→1:2)하여 보호대상아동 등이 자립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. (시행규칙 제19조)

- 아울러,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」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리도구 청결유지,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 등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. (시행규칙 별표 3)
-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 -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11월 29일(월)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**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
 -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홈페이지) 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“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”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 의견 제출방법(우편) >

○ 제출처

- 주소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&G 세종타워 B 12층
보건복지부(별관) 아동권리과
- * 전화: (044) 202 - 3436, FAX : (044) 202 - 3968

○ 기재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법인·단체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

<붙임> 「아동복지법」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<별첨> 「아동복지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붙임

「아동복지법」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☐ **보호아동 면접교섭 방법 규정**

- (법 개정사항)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 마련
- (시행규칙 개정사항) 각 시·군·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·관리 계획 수립 시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사항을 포함하고,
 - 아동복지시설에 면접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면접교섭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

☐ **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정부 지원금액 변경**

- 「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(21.7월)」에 따라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아동과 정부 지원금액 비율을 1:1에서 1:2로 변경
 - * (현행)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 → (개정)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

☐ **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**

- (건강관리) 「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필수·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항목 추가
- (급식위생) 조리도구 청결 유지, 유통기한 경과 또는 상한음식 사용 금지, 조리실 및 조리원 위생 관리 등 구체적 관리사항 추가